# 2022년 [재]광영장학회 장학생 모집 공고

2022년 (재)광영장학회 장학생 선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1일

(재)광영장학회 이시청광영

공고 내용은 다음 쪽부터 입니다.

## 2020년 (재)광영장학회 장학생 모집 계획

#### 1 근 거

- 「광양시 재단법인 광영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」제4조 (사업) 및 제5조(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)
- 재단법인 광영장학회 정관 제4조
- 재단법인 광영장학회 운영 규칙 제3조

### 2 신청자격(공통사항)

- 광영동 출신 또는 옥곡면 의암지구 출신으로 광영중학교를 졸업한자
- 공고일 기준 광영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
### 3 선발대상 및 지원 제외

#### 가. 선발대상

- 대학생(전문대포함)
  - 광영중학교 졸업자로 대학입학자 및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
    - 대학 및 전문대는 따로 평가 할 수 있음
  - 대학생(전문대포함) 중 30%이내에서 차상위계층,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발 가능

#### 나. 지원제외

- 장학금 신청자와 그 부·모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장학금의 이중·허위 수혜 등 기타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
- <u>타장학금으로 100만원 이상 수혜</u>를 받은 경우

#### 4 선발방법

- 선발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함
- 장학생 선발은 (재)광영장학회 이사회 심의 후 이사장이 최종결정 함

### 6 지원절차 및 일정

**공고 및 신청 접수** 8.1. ~ 8.31.

(재)광영장학회·광영동



**심사** 9.1~9.30.

(재)광영장학회



**대상자 확정** 10.30.까지

(재)광영장학회



**장학금 지급** 11 ~ 12월 중 (재)광영장학회

#### 7 지원규모

○ 대학생(전문대포함) : 10명×1,000,000원 = 10,000,000원

#### 8 구비서류

- 장학금 신청서 (서식 1)
- 광영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
- 성적증명서 (최종학기 성적증명서) 1부
- 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내역 포함) 1부
  - 지원자와 보호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
- 부·모, 본인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
-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
- 학자금, 장학금 수혜확인서 1부(서식 2, 3)
  -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회사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
- 개인(신용)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(서식 4)
- 신청인 서약서 1부(서식 5)
-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
(재)광영장학회 장학금 신청서											
	성	명			생	년월일				성별	
학 생	주	소	※ 도로명 =	F소 기재(주민등	등록등본 주의	소와 일치)					
정 보	학	교 명									
	학부	/ 전 공					전 화	자 휴대	택) I폰)		
	성	명	관 계		연 령		직 업			비 고 (전화번호)	
가 족											
정 보											
장학금 지 급	c	예금주(관	· 보계)			계좌번		]명)			
본인은 (재)광영장학회 2022년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											
장	학금.	을 신청	성합니디	<b>-</b> .							

※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.

2022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**재단법인 광영장학회 이사장** 귀하

년 학기

년 학기

년 학기

### 장학금 수혜확인서

학 교	명		학	과			학	년		
성	명		학	번						
주 (새주:	소 소)									
○ 장혈	○ 장학금 수혜여부(全학년)									
학	7]	장 학 금							비	고
	/	장학금명	=	1	액(원)	지급	일자		ΗΙ	11/
년	학기									
년	학기									

※ 장학금 수혜금액 없을 경우 금액란에 "해당없음"기재 바랍니다.

상기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2년 월 일

학교장 (직인)

재단법인 광영장학회 이사장 귀하

※ 반드시 학교 직인 날인 ※ 학교장 발행 서식도 가능

# 학자금 수혜확인서

회 사 명								
수 혜 자	부서				성 명			
수혜학생성명				(		I	대학)	
○ 학자금 지	급여부							
학 기		학 자 금					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
., ,,		- 액			지급일지	} 	'	
※ 학자금 수	-혜금액	없을 경우	금액린	ŀ에 ":	해당없음	응"기재	바랍니	기다.
상기	와 같이	틀림없음	을 확	인합	니다.			
		2022년	월	Ą	<u>]</u>			
		회사명 :				(직	인)	
		회사 확인	자 직		성기	명		(인)
<b>재단법인 광영장학회 이사장</b> 귀하								

※ 반드시 회사 직인 날인

###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

광영장학회는 학자금 지원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 정보 보호법」15조, 제17조, 제24조,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'신용정보법')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수집·이용에	관한 사항								
	학자금지원 ■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(장학 또는 대출) ■ 민원 처리 ■ 법령상 의무이행 등								
수집이용 목적	이중지원 확인·반환(상환)안내 ■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■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								
	※ 이중지원 :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은 경우								
수집:이용 항목	■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소속학교,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■ 학자금지원정보 : 지원상품종류, 지급일시,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								
보유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 이용됩니다. 단,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								
동의를 거부할 권기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·선정·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								
수집·이용 동의 여부	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)								
2. 제공·조회에									
제공·조회대상 기관	<ul> <li>■ 국가, 관계행정기관(안전행정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국토부,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)</li> <li>■ 법원행정처</li> <li>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</li> <li>●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</li> <li>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</li> <li>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기업</li> <li>■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</li> <li>■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・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</li> <li>■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</li> <li>■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</li> <li>■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</li> <li>■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: 수집·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</li> </ul>								
제공·조회 목적	학자금지원 (장학 또는 대출) ■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(장학 또는 대출) ■ 민원 처리 ■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·반환(상환)안내 ■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■ 이중지원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								
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	■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소속학교,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■ 학자금지원정보 : 지원상품종류, 지급일시,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학자금지원 내역 정보 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								
보유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위 제공·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. 단,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								
용틀 개활 권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·선정·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								
제공·조회 동의 여부	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🗆 동의하지 않음 🗆)								

2022년 월 일

성명: 서명 또는 (인)

## 신청인 서약서

본인은 (재)광영장학회의 장학금 신청인으로서 (재)광영장학회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 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#### <이중지원의 범위>

구분		종 류								
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		■ 국가, 관계행정기관(안전행정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국토부,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) ■ 법원행정처 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■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■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■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기업 ■「공익법인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■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,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■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■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■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								
학 자	대출	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- 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상환학자금(WEST 포함),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■ 타기관 학자금 -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 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 등								
금종종류	장학금	■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-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. II 유형, 대통령과학장학금, 대통령드림장학금, 국가우수 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전문대학 성적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■ 정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자체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-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								
	기타 학비 지원	■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								
중복지원 예외사항		<ul> <li>■ 근로장학금,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</li> <li>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</li> <li>■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</li> </ul>								

2022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